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6
----------	-----

제출년월 : 2025년 9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 추가(안 제6조제6호)
- 나. 선정 대리인 신청시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37조)
- 다.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
- 라.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9조)
- 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선정 대리인에 관한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1조의2, 제62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기간: 2025. 7. 10. ~ 7. 30.(20일간)
-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작성 제외
- 아동영향평가 결과: 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의 운영
에 관한 사항

제10장(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선정 대리인

제3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3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
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를 제4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u>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신설></u>	<u>제10장 선정 대리인</u>
<u><신설></u>	<u>제3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u>
<u><신설></u>	<u>제3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u>

<신 설>

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 불복청구인 · 대리인 지정일자 ·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생략)

제40조 (현행 제37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선정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적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감사담당관 代 나예주